

보 고 사 항

□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98. 7. 27
(화순군의회 공고 1998-5호)

< 공고내용 >

- 집회일시 : '98. 7. 29 (水) 오전 10시
- 집회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 제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결된 안건 처리 현황

-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98. 7. 20 집행부 이송
-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98. 7. 20 집행부 이송
-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98. 7. 20 집행부 이송
-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8. 7. 20 집행부 이송
-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8. 7. 20 집행부 이송
- 화순군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8. 7. 20 집행부 이송
-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8. 7. 20 집행부 이송
-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 - '98. 7. 20 집행부 이송
-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8. 7. 20 집행부 이송
-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8. 7. 20 집행부 이송

□ 각종 의안 발의 및 제출 현황

- 제6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98. 7. 24 의원발의
 - 발의자 : 문팔갑 의원외 4인
 - 회 기 : '98. 7. 29 (水) ~ 8. 1 (土) (4일간)

- 제65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98. 7. 24 의원발의
 - 발의자 : 문팔갑 의원외 4인
 - 출석요구내용 : 별 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98. 7. 24 의원발의
 - 발의자 : 문팔갑 의원외 4인
 - 주 문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의하여 화순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활동기간 : '98. 7. 29 (水) ~ 8. 1 (土) (4일간)
 - 구성인원 : 12 명
 - 제안이유
 -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06,118 백만원 과 특별 회계 15,099 백만원 등 으로 기정예산 대비 20,787 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서
 - 예산안 규모가 방대하여 본 회의의 제한적인 질의로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군의 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 주문과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토록 한 후 심의 처리 하는것이 회의운영에도 효율적이고 보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제안함.

○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98. 7. 27 의원발의

○ 발의자 : 김성인 의원의외 4인

○ 주 문

- 6.25 당시 국군의 공비토벌 작전중 양민들을 집단 학살한 사건의 진상을 조사코자 다음과같이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활동기간 : '98. 8. 1 (土) ~ 10. 31 (土) (92일간)

- 구성인원 : 6 명

○ 제안이유

- 6.25 당시 국군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중 양민들을 집단학살한 사건에 대하여 학살 피해자 신고 접수 및 현지확인등을 통하여 피해유족 실태 파악등을 통하여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국회, 정부등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들과 피해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 시키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건을 제안함.

○ 화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8. 7. 24 의원 발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 및 질문 응답)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시·군정 질문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대리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 소속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만 하부기관인 읍면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읍·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대리 하여 답변할 수 없으므로 화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서 읍·면장을 제외코자 함.

○ 주요골자

- 안 제2조 제5호 '법 제108조의 규정에서의한 하부 행정 기관장'을 삭제.

※ '98. 7. 25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8. 7. 24 의원 발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14877호('95. 12. 30)로 개정공포되어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개정 내용

- 안 제2조 제2호에 규정되어있는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
- 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되어있는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

※ '98. 7. 25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98. 7. 23 군수 제출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하려는 것임.

○ '98 제1차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비 고
계	121,217	100,930	20,287	증 20.1%	
일반회계	106,118	90,983	15,135	16.6	
특별회계	15,099	9,947	5,132	51.8	

○ 세입 재원 내역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계	지방세	세 외 수 입	지 방 교부세	국 고 보조금	도 비 보조금	지 방 양여금	지방채
15,135	△ 34	7,573	△ 1,620	1,048	1,115	△ 1,445	8,498

○ 일반회계 세출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	기정 예산	증·감	비 고
계	106,118	90,983	15,135	
일반 행정비	32,463	32,967	△ 504	
사회 개발비	34,253	21,025	13,228	
경제 개발비	35,207	34,157	1,050	
민 방 위 비	360	357	3	
자원및기타경비	3,835	2,477	1,358	

○ 특별회계 세출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	기정 예산	증·감	비 고
계	15,099	9,947	5,152	
주 택 사 업	248	156	92	
의료보호기금	2,426	3,068	△ 642	
상수도 사업	7,835	2,627	5,208	
농림수산업	743	686	57	
영세민생활안정	274	247	27	
농공단지조성	2,899	2,669	230	
주차장사업	574	494	80	
공영개발사업	100	0	100	

※ '98. 7. 25 각 상임위원회 회부

□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광주 - 도곡은천간 버스노선 개설 건의 - '98. 7. 11

○ 건의자 : 김 병 훈 (광주. 동. 중흥동 681-3)

○ 건의내용

- 현재 건설중인 광주대 - 앵남 - 도곡 은천 구간 도로가 완공 되면 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많은 광주시민이 이용할 수있도록 건의함.

○ 조치내용

- 화순군수에 이첩하여 광주광역시 와 화순군, 광주광역시 시내버스조합과 우리군 농어촌 버스운송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버스노선이 개설토록 추진

○ 6.25당시 국군에의한 양민학살 진상 조사 탄원 - '98. 7. 20

○ 탄원자 : 오 옥 탁 (화순군 남면 다산리 623)

○ 탄원내용

- 1950년 11월 17일 남면 다산리에서 국군이 양민을 26명을 희생시키고 가옥 100여호를 전소한 사건의 진상을 밝혀 희생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함.

○ 조치내용

- '98. 7. 20 총무위원회 회부

○ 고려시멘트 제조(주) 북면 백아산 석회석 광산 채광계획 변경승인 관련 탄원

- '98. 7. 16

○ 탄원자 : 박 재 양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24) 외 364

○ 탄원내용

- 1998년 5월 21일자로 북면 백아산 석회석 광산 산림형질 변경 허가기간 이 만료 되어 석회석 채취가 중단되어 고려시멘트 제조(주) 공장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어 고려시멘트 제조(주)가 신청한 북면광산에 대한 채광 계획변경을 조속히 인가 받아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 하고자 탄원서를 제출함.

○ 조치내용

- '98. 7. 24 허가권자인 화순군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토록 이첩

○ 화순읍 도시계획(교육청-천주교) 관련 건의 - '98. 7. 20

○ 건의자 : 조 정 기 (화순읍 광덕리 부영2차 204-1003호)

○ 건의내용

- 1972년에 지정된 화순읍 도시계획중 교육청 - 천주교 - 황새봉까지 연결된 화순중앙도로가 현재까지 시설 되지않고 있어 주택 개·보수는 물론 증축, 매매 등을 못하고 있으므로 사유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조치내용

- '98. 7. 24 화순군수에게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이첩함.

□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3.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